

미혼모 관련 연구에 대한 비판적 페미니즘 분석

— KCI 등재후보지 이상을 중심으로 —

김태영*

목 차

-
- | | |
|------------------|---------------------------|
| 1. 서론 | 4. 미혼모 담론의 변화와 젠더 부정의 재생산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연구 방법 및 분석 대상 |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미혼모 관련 연구들이 미혼모를 어떠한 관점에서 규정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규정 방식이 젠더 부정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산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미혼모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낸시 프레이저의 젠더 부정의, 즉 부적절한 재분배-불인정-대표불능이라는 세 차원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970~90년대 미혼모 관련 연구들은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복지 수혜자로, 최근 연구에서는 권리 주체로 호명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담론적 규정은 시기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부적절한 재분배-불인정-대표불능이라는 세 차원이 서로 얽힌 구조 속에서, 미혼모를 둘러싼 젠더 부정의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본 연구는 미혼모 관련 연구의 담론적 전환을 젠더화된 시민권 논의 속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 미혼모, 젠더 부정의, 비판적 페미니즘, 낸시 프레이저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여성학전공 박사과정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에 실시된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세대 가구 39.6%, 1인 가구 33.6%, 1세대 가구 25.1%로 나타났다.¹⁾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비혈연 관계의 가족, 성소수자가족 등 다양한 가족구성이 사회적 현실을 차지하고 있다. 더 이상 ‘결혼한 부부와 그 자녀’인 초혼 이성에 핵가족의 형태가 가족 규범 모델이라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소위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활공동체를 인정받기 위해 친구를 입양하거나²⁾, 동성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 평등소송³⁾을 제기하는가 하면,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에 의한 가족구성 등 새로운 가족 실천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존의 협소한 가족 규범을 재고하고 ‘가족 구성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⁴⁾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역시 가족 다양성 인식 확산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왔다.⁵⁾

그러나 가족의 형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⁶⁾와 그 자녀로 구성된 미혼모가족은 여전히 그 가족의 형태를 사

- 1) 여성가족부, 「2023 가족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
- 2) 『친구를 입양했습니다』의 저자 은서란은 친구를 ‘딸’로 입양하여 현행 가족제도의 한계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해 사회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저서를 통해 알렸다.
- 3) 2025년 10월, 6쌍의 동성부부가 ‘혼인평등’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례이다. 동성 부부의 혼인할 권리와 이에 대한 법적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한국 사회의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해 ‘모두의 결혼’이라는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 4)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2022.
- 5) 여성가족부,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021.
- 6)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미혼 여성’이라는 의미인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나, 법적으로 공식화된 개념은 아니다.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혼모는 제도적으로 ‘한부모’ 범주에 포함된다. 이때 ‘한부모’가 법과 정책 영역에서 사용되는 제도적 용어인 반면, ‘미혼모’는 성적 도덕 규범과 결부되어 서로 결이 다른 낙인 효과를 동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담론적 차이를 문제화하고, 주변화된 ‘미혼모’의 위치성을 가시화하기 위해 분석 범주를 ‘미혼모’로 한정하였다. 다만,

회적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⁷⁾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가족 규범에 균열을 일으켰고, 2011년, 입양인 당사자권리운동과 양육에 대한 권리 제고에 따른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 기존 「모부자복지법」의 협소한 부모 범위에서 조손가족, 미혼모가족 등 좀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괄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정책이 도입되었다. 일련의 흐름으로 보아 혼외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허용’의 수준에 머무르는 미온한 변화로 보이며, 결혼제도 바깥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규범적 비난은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⁸⁾ 따라서 미혼모가족은 법적으로는 ‘한부모가족’ 범주에 포함되지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낙인의 대상이자 주변화되고 비가시화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정책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주로 ‘한부모’라는 포괄적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⁹⁾ 이들 연구는 주로 빈곤 여성 가장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모색, 여성가장 가족의 사회권 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혼모는 법률상 한부모 범주에 포괄되지만, 엄밀히 말해 ‘한부모’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포괄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 한부모 범주에는 사별, 이혼, 별거, 사실혼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르기 때문에, 혼인제도 바깥에서 ‘미혼모’가 경험하는 고유한 낙인 구조를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는 분석적 한계를 갖는다.

그동안 미혼모 문제는 ‘한부모’라는 제도 범주의 포괄성 속에 흡수되어 미혼 여성의 성적 도덕 규범과 결합된 낙인 구조와 이와 얽혀 있는 재분배 문제

권리 주체 담론은 한부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미혼모 관련 연구에서의 담론 공백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일부 한부모 연구를 보조적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때는 원문의 표기인 ‘한부모’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7) 이용우,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97~115면 참조.
- 8) 성정현·김희주,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28(1), 한국가족학회, 2016., 소영현, 「재생산 미래주의와 ‘미혼모’의 몸-자리」, 『현대소설연구』 9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5.
- 9) 김정현, 2013, 성미애·진미정, 2009, 성정현 외, 2018, 송다영, 2006, 장수정 외, 2021.

등이 면밀히 분석되지 못하며, 학술적 분석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주변화되어 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미혼모를 한부모 범주의 하위단위로 축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재분배, 차별과 배제,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점차 늘고 있다.¹⁰⁾ 이러한 접근은 미혼모를 복지 정책 대상에 머무르게 하는 기존 관점을 비판하면서 미혼모를 젠더화된 시민 주체로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보여준다.

미혼모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은 미혼모와 관련된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탐구한 연구¹¹⁾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 미혼모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¹²⁾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미혼모 관련 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미혼모 관련 연구 동향을 정책 차원에만 국한하여 분석하거나, 또 단순히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떤 연구주제와 방법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타분석들은 미혼모 관련 연구의 관점과 문제의식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낸시 프레이저가 이론화한 젠더 정의, 즉 재분배-인정-대표성의 젠더 정의론을 분석틀로 삼는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재분배의 차원, 인정의 차원 중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석된 경향이 있다. 즉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의 차원에서 미혼모 문제를 다루면서, 미혼모 정체성과 결부된 낙인과 차별, 배제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루거나¹³⁾, 분석의 초점이 인정의 차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재분배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¹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미혼모가 경험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다

10) 권희정, 2011, 김혜영, 2013, 성정현·김희주, 2016, 소영현, 2025, 정지연, 2023, 정지연, 2025.

11) 이용우,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12) 윤소라·장진경, 「미혼모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9(3), 한국가족치료학회, 2021.

13) 김지혜·김희주, 2018, 문순영, 2015, 장운정, 2017, 홍봉선·남미애, 2011.

14) 강라현, 2021, 김혜영, 2013, 김희주·권종희·최형숙, 2012, 정지연·이미정, 2020.

층적 층위를 충분히 포괄하여 논의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더 나아가 대표성의 차원, 즉 권리 주체로서의 미혼모에 대한 논의는 ‘한부모’ 연구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미혼모’ 연구에서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권희정(2011)의 연구를 제외하면 찾기가 어렵다.¹⁵⁾ 이러한 분석의 공백은 미혼모의 담론적 위치성이 주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낸시 프레이저가 정의한 젠더 부정의, 즉 부적절한 재분배-불인정-대표불능이라는 세 차원을 분석틀로 삼아 기존의 미혼모 관련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미혼모를 성적 일탈자로 낙인화하거나 단순한 복지 수혜자로 위치시키는 기존 담론을 넘어, 미혼모에 대한 부적절한 재분배 문제, 낙인, 차별과 배제의 문제, 미혼모의 정치적 대표성 논의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미혼모 관련 연구의 분석 지평을 확장하고, 기존 한계를 넘어선 다각적 연구의 전환을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낸시 프레이저는 젠더 정의를 구성하는 핵심 축을 재분배-인정-대표성이라는 세 차원으로 분석적으로 구분하고, 이 삼중 구도를 통해 기존의 재분배 중심 또는 인정 중심 접근이 지닌 한계를 비판하며 젠더 정의의 관점을 재구성한다. 즉, 프레이저는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부정의가 단일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재분배-인정-대표성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이 얽혀 발생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다.

프레이저는 20세기 이후 정치적 갈등을 표현하는 패러다임이 인정 투쟁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인정 투쟁 속에서 재분배 투쟁이 사실상 종속되었다고 비판한다.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민족성, 장애유무, 국적 등 차이에 기반한 문화적 인정의 문제가 사회경제적 재분배보다 더 강

15) 권희정, 「인권, 모성권, 아동복지 측면에서 본 미혼모를 둘러싼 쟁점들」, 『이화젠더법학』 2(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조되는 시대적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⁶⁾ 그러나 프레이저의 관점에서 재분배와 인정은 실체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얽혀 있으며,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의는 정치·경제적 차원과 문화·상징적 차원을 가로지르며 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이저는 ‘여성’을 “이가적(bivalent)” 집단으로 규정한다¹⁷⁾. 이는 계급이 주로 경제적 재분배의 문제로, 섹슈얼리티가 주로 문화적 인정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과 달리, 젠더 부정의가 단일한 층위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경제적 구조와 문화·상징적 평가 구조라는 두 축 모두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하지만,¹⁸⁾ 프레이저는 두 차원의 구분이 실체적 분리가 아니라 분석적 구분임을 강조한다.

재분배의 차원에서 젠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배치를 조직하는 핵심 원리로 작동한다. 젠더화된 노동분업은 임금노동과 돌봄·가사노동을 포함한 재생산노동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며, 여성에게 무임금 재생산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부과한다. 이는 임금노동 내부에서도 고임금·남성 중심 직종과 저임금·여성 중심 직종의 위계화를 고착시키고, 젠더 기반의 경제적 불평등을 제도적 구조로 만든다. 한편, 인정의 차원에서 젠더는 사회적 지위질서를 조직하는 문화적 기표로 기능한다. 남성중심적 가치체계는 ‘남성성’으로 분류되는 속성에 우월성을 부여하고, ‘여성적’ 속성은 평가절하한다. 이러한 문화적 코드들은 일상세계의 상호작용, 대중문화, 제도적 실천 등 삶의 전반에 스며들어 여성에게 지속적인 지위중속을 부과하며, 이것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인정의 부정의를 단순한 문화적 편향이나 상부구조의 잔여로 축소하지 않고, 재분배 차원과 독립적으로도 고유한 치유를 요구하는 구조적 부정의로 파악한다. 요컨대, 젠더 부정의는 경제적 구조와 문화적 지위질서의 얽힘 속에서 생산되는 복합적 부정의이며, 이는 재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축을 분리하지 않는 통합적 분석틀에서만 조명될 수 있다.

프레이저는 자신의 논의를 확장시키며, 젠더 부정의를 구성하는 또 다른

16)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2017, 14면 참조.

17) 낸시 프레이저,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그린비, 2016, 44면.

18) 같은 책, 42~43면 참조.

차원으로 ‘대표성’을 추가한다. 이는 젠더 부정의가 재분배와 인정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으며, 제도 설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불능이 구조적 배제의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분배의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더라도, 여성성을 평가절하하는 문화적 틀이 존속하면 인정의 부정의는 지속된다. 반대로 인정의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가 재구성되더라도, 대표성의 부재가 유지된다면 재분배와 인정의 개선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세 차원은 서로를 대체하거나 환원할 수 없는 독립적 차원인 동시에, 상호적으로 얽혀 부정의를 재생산하는 장치로 작동한다.¹⁹⁾ 따라서 특정 차원을 특권화하거나 다른 차원을 부차화하는 접근은 부정의를 재생산하며, 교차적이고 다층적인 젠더 부정의 메커니즘을 포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프레이저의 젠더 정의론은 젠더 부정의를 구성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버틀러는 프레이저가 젠더와 섹슈얼리티 억압을 ‘인정’, 즉 문화·상징적 차원의 문제로 분류하는 방식이 억압의 물질적·제도적 성격을 축소하고, 탈정치화할 위험을 지닌다고 비판하였다. 프레이저의 삼중 젠더 정의론은 경제·문화·정치 차원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강점을 지니지만, 버틀러의 입장에서는 젠더화된 권력관계와 규범적 폭력이 어떻게 주체를 구성하는지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프레이저의 젠더 정의론이 한국의 미혼모 문제를 젠더 부정의의 구조 속에서 분석할 때, 유용한 지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한국의 미혼모 담론은 주로 경제적 빈곤과 돌봄 부담이라는 재분배의 문제에 집중하거나 미혼모 정체성에 결부된 낙인과 차별, 배제 문제에 집중해왔다. 앞서 논의한대로, 두 차원 중 하나에 치우쳐진 분석 관점은 미혼모가 경험하는 구조적 젠더 부정의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미혼모를 비도덕적이거나 일탈적 존재로 규정하는 문화적 낙인은 인정 부정의를 강화하며, 미혼모를 지속적으로 무시, 멸시, 배제의 대상으로 만든다. 인정 부정의는 재분배의 부정의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분배와

19)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2017, 270면 참조.

20) 주디스 버틀러, 임옥희, 「단지 문화적」, *오늘의 문예비평* 56, 2005.

인정, 두 차원이 얽혀 젠더 부정의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미혼모는 자신들의 삶과 재생산 조건을 결정하는 정치 구조에서 거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며, 관련된 정치적 절차에서 주변화된다. 이는 대표성의 부재가 재분배와 인정 차원의 개선 가능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혼모를 둘러싼 젠더 부정의를 논하려면, 경제적 지원 확대와 같은 정책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동시에 문화적 지위질서를 전환하고, 미혼모 당사자가 공적 영역에서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구성하는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레이저의 젠더 정의론은 미혼모 담론을 다층적 젠더 부정의의 구조로 재구성하기 위한 핵심 분석틀이 된다.

3. 연구 방법 및 분석 대상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KCI 등재후보지 이상²¹⁾에 게재된 미혼모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문헌 검토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샌드라 하딩은 지식은 가치중립적이고 공정한 연구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특정 연구자와 비평가들의 관계에서 구성된 결과물임을 지적하였다.²²⁾ 하딩은 여성들의 삶으로부터 나온 객관적인 관점만이 여성주의 지식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²³⁾ 따라서 페미니즘 연구는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식이 구성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를 특정한 범주로 규정하고 위치시키는 지식 생산의 실천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텍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담화와 담론을 접합하며, 그 과정에서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를 재구성한다.²⁴⁾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에서 재현되는 관점을 찾아내서 분석하고자

21) 본 연구에서 KCI 등재후보지 기준은 자료 수집을 위한 검색 조건으로 활용되었기에, KCI 제도 도입 이전에 발간된 논문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22)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2009, 218~291면 참조.

23) 조주현, 「샌드라 하딩」, 『여/성이론』 14, 2006, 156면 참조.

하며,²⁵⁾ 이를 통해 미혼모를 둘러싼 담론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 단위는 각 연구가 미혼모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개념 정의, 문제 설정 방식, 원인 진단, 정책 제안의 논리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 관련 연구들이 미혼모를 어떻게 규정하고, 배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학술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 ‘복지 수혜자’, ‘권리 주체’로 규정한 연구들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호명이 젠더 정의의 관점, 즉 재분배-인정-대표성 차원에서 어떻게 상호 얽혀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젠더 부정의를 재생산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본 연구는 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미혼모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젠더 부정의에 대한 분석틀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KCI 제도는 엄격한 평가 기준을 두어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일정한 질을 보장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학위논문, 서평, 보고서 등은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논문들과 형식이 다르고, 분석 범위에 포함된 연구들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RISS, DBPIA, KCI 총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미혼모’를 검색어로 설정하여, 논문 제목, 핵심 키워드, 초록에 검색어가 포함되는 논문을 ‘OR’ 방식을 이용하여 최대한 검색 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한국어 논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RISS(165편), DBPIA(122편), KCI(170편), 총 457편의 논문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였다. 이후 데이터베이스 간 중복 논문 169편을 제거하여 288편의 문헌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에 따라 이차적으로 논문을 선별하였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은 다음과 같

24) 노먼 페어클립, 『담화 분석 방법: 사회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 분석』, 도서출판 경진, 2012, 297면 참조.

25) 같은 책, 285면 참조.

은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첫째, 미혼모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시설 종사자, 전문가 집단, 의료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혼모 담론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둘째, 입양아, 아동권리, 아동복지 등 아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미혼모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셋째, 미혼모와 연관된 익명출산 또는 보호출산제, 출생신고제도와 같은 제도적 논의 또한 제외하였다. 넷째, 검색 과정 중에 ‘비혼모’와 ‘한부모’ 용어를 사용한 논문들이 함께 검색되었다. 해당 연구는 ‘미혼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 연구의 논의와 상응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포함하였고, 그렇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50편의 문헌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은 ‘미혼모’라는 범주를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미혼모만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성과 그에 따른 젠더 부정의를 면밀히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미혼모 관련 선행연구 150편을 대상으로, 미혼모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재분배-인정-대표성의 각 차원을 이론적 분석틀로 두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선행연구를 단순히 분류하는 데 있지 않고, 해당 연구가 미혼모를 어떠한 규범적 주체로 구성하는지, 어떠한 정의의 차원을 주로 문제화하는지를 분류하여 검토하는 데 있다.

미혼모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연구가 미혼모를 보호 대상, 복지 수혜자, 권리 주체로 규정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이론적 분석틀은 해당 연구가 미혼모 문제를 빈곤, 자립, 복지제도, 제도 개선 등 물질적 조건의 문제로 설정한 경우 재분배 차원으로, 낙인, 차별, 문화적 재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비판 등을 핵심 문제로 설정한 경우 인정 차원으로, 시민권, 사회적, 당사자 권리운동을 중점적으로 다룬 경우 대표성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모든 논문은 복합적인 논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의 제목, 초록, 결론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분석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전에 판정 규칙을 설정하였다. 예컨대, 제도 분석과 낙인 비판을 동시에 포함하는 연구의 경우, 결론부에서 정책 개선의 방향이 급여 확대나 제

도 접근성 강화에 귀결되면 재분배 차원으로, 차별 구조와 문화적 낙인 해체에 귀결되면 인정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권리를 언급하더라도 시민권, 정책 참여, 당사자 배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성 차원이 아니라 인정 차원으로 판정하였다. 미혼모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했지만 분석의 초점이 스트레스 요인이나 심리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개인적 요인에 한정되어 사회적·구조적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분석 대상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시기별 논문 편수

연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논문수	1	2	4	25	78	40

〈표 2〉 학술지 분과학문별 논문 편수

분과학문	사회복지	사회과학	여성	간호	기타
논문수	46	37	15	14	38

〈표 3〉 미혼모 담론별 논문 편수

	요보호 여성	복지 수혜자	권리 주체	기타
논문수	17	85	18	30

〈표 4〉 이론적 틀에 의해 분류한 논문 편수

	재분배	인정	대표성	기타
논문수	77	28	3	42

4. 미혼모 담론의 변화와 젠더 부정의의 재생산

1) ‘요보호 여성’으로서의 미혼모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 현상이 대두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전쟁 ‘미망인’의 구호사업을 포함한 “요보호 여성”에 대한 ‘부녀보호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⁶⁾ 전후 국가 재정비와 근대 국가 건립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부녀보호사업의 기본 방향은 ‘요보호 여성’의 수용·교정·갱생을 핵심 목표로 삼았으며, 그 범주에는 미혼모, 빈곤 여성, 윤락 여성, 부랑 여성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들은 근대화 시기에 규범적 여성상으로 간주된 여대생, 여성지도자, 중산층 가정주부를 제외한 상당히 광범위한 여성들을 지칭한다. 국가가 제시한 보호의 논리는 이들을 ‘도덕 위험’에 노출된 집단으로 간주하고, 시설 수용과 직업훈련을 통해 이전의 ‘정상적 삶’으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²⁷⁾ 그리고 이들의 자녀는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 보내는 것이 아동의 보호와 복지의 최선의 선택지로 간주되며, 국내외 입양이 제도화되었다.²⁸⁾ 이러한 국가 사업 체계에서 미혼모 문제는 그 자체로 호명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규정된 집단 내부에서 파생되는 부차적 문제로 간주되었다. 즉 미혼모 문제는 다양한 여성 범주 가운데 성적으로 일탈했다고 판단된 여성들에 대한 여성혐오적 시선 속에서 이해되었으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미혼모는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관리와 통제, 규율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미혼모’라는 용어는 1960년대 사회복지연구에서 “unwed mother”과 “unmarried mother”에 대한 번역어로 소개되었고, 1970년대부터 학술 영역을 넘어 사회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²⁹⁾ 본 연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26) 신필식,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한국여성학』 33(3), 한국여성학회, 2017, 329면.

27) 김원,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아시아여성연구』 43(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4, 195~196면 참조.

28) 권희정,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 연구』 15(1), 한국여성연구소, 2015.

29) 소영현, 「재생산 미래주의와 ‘미혼모’의 몸-자리」, 『현대소설연구』 99, 한국현대소설

1975년, ‘미혼모’라는 용어가 학위논문을 제외한 일반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³⁰⁾ 또한 국내 입양기관인 한국기독교양자회가 주관하는 친권 포기 상담 등을 통해 미혼모 상담 사업이 최초로 도입되었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이 이어서 미혼모 상담 및 보호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³¹⁾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당시 미혼모 문제는 단일한 사회문제로서 대두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여성 문제’를 포괄하는 부녀보호사업의 일부로 환원되었다.³²⁾

성영혜(1975)의 「韓國 未婚母의 現況分析(한국 미혼모의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는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그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며 정책적 대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당시 한국 사회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면서 성적 도덕 규범과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 미혼모 현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보았다. 해당 연구는 미혼모 현상이 증가한 결정적 원인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 가정환경의 불안정성,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결핍, 성교육 부족 등을 제시하면서 심리학·정신분석학 이론을 인용해 미혼모가 의존적이거나 성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식의 병리적 설명을 강화한다. 이러한 초기 연구의 관점은 미혼모 문제를 심리적 취약성과 같은 개인적 문제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결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데, 성교육 강화, 가정 기능 회복, 청소년 보호, 미혼모 시설 확충, 상담 강화, 입양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해당 연구는 1970년대 한국 사회사업학의 전형적 시각을 반영하며, 미혼

학회, 2025, 140면.

30) 성영혜, 「韓國 未婚母의 現況分析」, 『아시아여성연구』 14,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1975.

31) 권희정,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의 탈모성과 역사」 『구술사연구』 5(2), 한글구술사학회, 2014, 51-52면 참조.

32) 신필식,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한국여성학』 33(3), 한국여성학회, 2017.

모를 도덕적 규범과 개인 병리 모델, 가족기능주의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초기 미혼모 관련 연구가 이들에 대해 비도덕적이고 비구조적인 관점을 내면화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1980년대에도 이어진다. 허남순(1986)의 「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에서도 미혼모 문제를 서구 산업사회에서 겪은 병리적 현상, 즉 성 규범 문제로 바라보는 점³³⁾에서 앞서 언급한 성영혜의 논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⁴⁾.

성규탁(1983)의 논문 「低所得家庭을 위한 家族計劃事業에 寄與하는 社會事業: 美國의 境遇(저소득가정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에 기여하는 사회사업: 미국의 경우)」는 당시 미국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저소득층 여성의 ‘과다 출산’과 ‘가족기능 약화’를 빈곤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사회사업적 시각이 드러난다. 이 연구는 ‘미혼모’를 직접적으로 호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소득층, 빈곤 여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일부 미혼모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족계획사업이 저소득층 여성의 높은 출산율, 불안정한 생활, 의료 접근성의 부족 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기능을 가진다고 전제하며, 사례관리, 상담, 교육, 탁아서비스, 의료 및 직업자원 연계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결국 개인적 태도 변화, 가족 기능의 강화, 빈곤, 저소득층 여성의 임신·출산을 ‘예방’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여전히 미혼모를 병리적 존재로 낙인화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미혼모를 위한 “사회사업 서어비스”를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면서 미혼모를 빈곤, 가족 해체에 따른 정서적 불안정, 학교 문제 등 다양한 위험에 동시에 놓여 있는 집단으로 설명한다.³⁵⁾ 그러나 그 해결책은 심층 상담, 보호시설 연계, 피임교육, 직업훈련 제공 등 ‘교정·보호’ 중심의 개입으

33) 허남순, 「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8, 한국사회복지학회, 1986, 107면 참조.

34) 허남순(1986)의 논문은 일부 페이지(130, 131)가 누락되어 결론부의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35) 성규탁, 「低所得家庭을 위한 家族計劃事業에 寄與하는 社會事業」 『신학논단』 16,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3, 428면.

로 제시되며, 미혼모 문제의 ‘발생’과 ‘예방’이 강조된 앞서 언급한 논문들과 관점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규약의 연구는 당시 사회사업계가 저소득층 여성을 포함한 미혼모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기능적 결함과 도덕적 규범의 약화로 설명하던 시대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1970~80년대 연구 동향을 분석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는 윤락 여성, 빈곤 여성, 부랑 여성 등과 함께 ‘요보호 여성’이라는 제도적·도덕적 범주 속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젠더 정의의 세 차원인 재분배·인정·대표성, 어느 차원에서도 미혼모를 주체적 존재로 사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국가와 사회사업계의 지배적 서사는 미혼모를 구조적 불평등의 담지자가 아니라 ‘도덕적 일탈’이나 ‘가족기능 붕괴’의 결과로 설명함으로써, 부적절한 재분배, 문화적 불인정, 정치적 대표성이라는 부정의 차원의 문제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미혼모는 보호·교정·수용이라는 언술과 함께 사회문제로 다루어졌으나, 더 근본적으로 파악하자면, 빈곤 여성, 윤락 여성, 부랑 여성 등과 함께 국가적 관리·통제·규율의 대상으로 위치지워지는 것이었다. 즉, ‘보호’라는 언표는 오히려 관리·통제·규율의 논리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했기에, 미혼모를 제도의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시민 주체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미혼모를 젠더 정의의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기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당대의 학술 지형에서는 젠더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억압을 분석하는 언어가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그와 같은 개념들을 기대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현재주의적 판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시대적 조건이 어떻게 미혼모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며, 어떤 사회적 효과를 재생산 했는가를 분석하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혼모가 ‘요보호 여성’으로 묶여 일종의 낙인화를 겪었다는 점은 학술 담론 지형에서 젠더 정의를 적극적으로 부정했다기보다 젠더 정의라는 문제 의식이 성립할 여지가 애초에 마련되지 않았던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드러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 동향은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 범주 속에서 병리화하는 사회적 관점을 수용하며, 젠더 부정을 재생산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달리 말해, 학계는 정책적·제도적 실천과 연계되는 지식의 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동향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혼모 낙인과 차별의 구조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즉, 학술논문은 그 자체로 사회적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하는 권위를 지녔기에, 당대의 연구들이 구성한 문제의식의 틀은 미혼모를 시민 주체로 상상할 여지를 더욱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2) 복지 수혜자로서의 미혼모

1990년대까지의 미혼모 관련 연구는 여전히 미혼모를 개인적 일탈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하며, 이들을 병리적 존재로 분류하는 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³⁶⁾ 주연옥·김상순·최연희(1997)는 입양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이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모를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로 규정하고, 이 시기에 미혼모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의 습득”과 “가정의 불화”를 지적하고 있다.³⁷⁾ 한영란과 양순옥(1997)은 간호학적 측면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출산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담과 간호, 지역사회 지지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³⁸⁾ 이 연구에서도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임신중지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된 임신과 출산을 문제적이라 보았다. 이처럼 1990년대 연구에서 미혼모의 모성은 사회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삶의 형태로 상정되지 않았으며, 연구의 동향은 주로 미혼모의 발생 요인과 인구적 특성, 실태조사, 예방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혼모는 여전히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해야 할 사회문제적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를 둘러싼 학술적 담

36) 윤희미, 1999, 주연옥·김상순·최연희, 1997, 한영란·양순옥, 1997.

37) 주연옥·김상순·최연희, 「일부 보호시설에 등록된 미혼모의 특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2),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1997, 345면.

38) 한영란·양순옥,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1(2), 한국보건간호학회, 1997.

론은 병리화 중심의 접근에서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재구성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³⁹⁾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성적 일탈’과 ‘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오가며 이중적 낙인 서사가 드러난다. 청소년 미혼모는 양가적 정체성을 가지는데, 이들은 ‘미성년자’로서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발달 과업 과정 중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자녀의 양육자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⁴⁰⁾ 이러한 청소년 미혼모를 둘러싼 낙인은 1990년대의 청소년 문제의 일환으로서의 미혼모 병리화 관점과는 다른 결을 지닌다. 이현주·송진아(2011)는 청소년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적 관점이 201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⁴¹⁾ 이들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는 더 이상 일탈적이거나 위협한 존재로만 치부되지 않으며, 청소년의 성관계에 따른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이 연구의 관점에서는 청소년 미혼모 문제가 일정 부분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수용되는 문화적 분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된 이른바 “리틀맘 담론”과 결합하여 나타났다.⁴²⁾ 그 과정에서 청소년 미혼모는 어린 나이에 저지른 일탈과 그에 책임을 다하고자 기꺼이 양육을 선택한, 그렇기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10대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 재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어졌다고 보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재구성되었음을 주장한다.

한편으로,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정부는 “근로가능한 자에게 일자리를, 근로가 불가능한 자에게는 사회보조”라는 기치 아래 복지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4대 사회보험의 확대 및 적용, 공공부조제도 개혁을 통한

39) 이용우,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40) 은주희·임고운, 「청소년미혼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무시와 인정: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41(2),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41) 이현주·송진아, 「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 중단과 의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1, 57~58면.

42) 같은 논문, 58면.

보편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등 국내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단행하였다.⁴³⁾ 그밖에 2005년 호주제 폐지와 같은 가족제도의 재편, 저출산·고령화 담론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의 수립 등 재생산과 가족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가족에 대한 복지 제도가 자리잡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담론은 인구문제를 ‘사회적 위기’로 명명하며, 그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가족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에 집중되어 있던 복지 책임을 다시 가족에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가족은 한국의 복지시스템에서 전통적인 “복지공급원”이며, 한국의 복지체계는 ‘정상가족’과 “여기서 배제된 잔여적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잔여적 복지 유형”에 부합한다고 평가받는다.⁴⁴⁾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 담론인 성장중심주의는 사회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시각을 강화하였다. 즉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상을 복지의 수혜자로 한정하며,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기준으로 한 ‘정상가족’에서 미끄러진 존재는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결핍된 주체로 타자화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혼모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 주체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잔여적 존재’로 남게 된다. 복지제도는 이런 구도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가 낙인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⁴⁵⁾ 또 최소한의 생계만 보장하는 잔여적 복지체계는 선별주의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함, 취약함, 무능력함 등이 서류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결핍의 언어로 설명해야 하며, 복지혜택은 ‘얼마나 취약한가’, ‘얼마나 가난한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분배된다.

43)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국제정치논총』 47(2),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100면.

44) 같은 논문, 106면.

45) 김지혜, 「권리 기반의 가족복지정책 : 기능주의를 탈피하는 관점의 전환을 모색하며」, 『비판사회정책』 88,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5, 17면.

한편,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은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가 유지된 조건 속에서 강화되었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은 여성의 재생산권이 여전히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 있음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970년대 인구 억제 정책으로 활용되면서 국가가 암묵적으로 용인하던 임신중지는 ‘저출산 시대’에 진입하면서 범죄로 전면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형사법적 통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로 하여금 ‘낙태’라는 불법과 출산이라는 합법 사이의 경계에서 국가가 설계한 합법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또한 국가는 이들의 임신을 ‘위기임신’으로 명명하고,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복지체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공고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과 출산을 선택한 여성 모두에게 낙인을 부여한다. 임신중지 행위는 공식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면서도,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은 법을 어긴 존재이자 생명을 경시한 비도덕적 주체로 낙인찍혀 왔다. 동시에 미혼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은 출산 이후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경우 ‘모성애가 결여된 여성’ 혹은 우울과 죄책감을 느끼는 ‘불행한 여성’으로, 반대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없이’ 빈곤과 불안정한 삶을 재생산하는 ‘무책임한 존재’로 평가되기 쉬웠다. 즉, 미혼 여성이 출산 이후에 양육을 선택하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승인 가능한 경로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미혼모는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⁴⁶⁾

2000년대 초반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 위와 같은 이중적 낙인 구조에 의해 미혼모 복지정책이 보호적인 장치로만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복지정책은 미혼모를 지원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그 지원은 ‘가난하지만 노력하는 어머니’라는 도덕적 조건 위에서만 정당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혼모는 임신중지를 선택할 권리도, 출산 이후 다양한 삶의 경로를 인정받을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출산을 전제로 한 복지체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로 구성되었다.

위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일탈자’

46) 권희정, 2011, 김희주·권종희·최형숙, 2012, 122면 참조.

나 ‘병리적 존재’로 규정하던 시기를 지나,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보다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복지 수혜자로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미혼모 관련 연구는 미혼모가 실제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거나 지원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혼모의 삶을 복지 수혜자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⁴⁷⁾ 이러한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의 핵심에는 ‘자립’이라는 규범적 목표가 놓여 있다.⁴⁸⁾ 해당 연구들은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립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하며, 돌봄에 대한 책임 없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기준에서 미혼모는 홀로 양육과 돌봄을 수행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도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다.

그렇다면, 미혼모가 개인의 노동과 돌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지원받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근접한 경제적 자립 상태에 도달한다면, 미혼모를 둘러싼 젠더 부정의는 해소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 복지정책은 오랫동안 재분배와 인정의 문제가 분리되지 않은 채 동시에 작동해 왔다. 표면적으로 복지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자립촉진수당 등 재분배의 문제로 이해되기 쉽지만, 프레임의 관점에서 볼 때, 복지는 단순한 재분배의 장이 아니다. 복지체계는 누가 그 재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규정하는 특정한 사회적 지위질서와 결합된 인정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예컨대, 청소년 미혼모는 낙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학교로 전학하는 등 ‘정상적 삶’의 궤적을 벗어난 이탈적 존재로 규정된다.⁴⁹⁾ 한국 사회에서 학력주의는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매개

47) 김희주·권중희·최형숙, 2012, 문순영, 2015, 이운정, 2024, 하지선·김지선·황경란, 2020.

48) 김지혜·조성희, 2020, 윤정혜, 2014, 이용우, 2017, 장운정, 2017, 홍봉선·남미애, 2011.

49) 이현주·송진아, 「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 중단과 의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1, 71~76면 참조.

하는 핵심 규범으로 작동하며, 따라서 학업 중단은 향후 빈곤 위험과 쉽게 결부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소년 미혼모는 다시 ‘문제적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낙인은 반복적으로 강화되기 쉽다. 다른 한편, 실제로 미혼모들은 복지 수혜 신청을 할 때, 공무원의 차별적 태도나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복지 수급 신청을 주저하기도 한다.⁵⁰⁾ 이러한 사례는 복지가 단순한 재분배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의 차원과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인정 역시 재분배의 조건과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복지 체제는 재분배와 인정의 문제가 상호 얽혀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그 과정에서 젠더 부정의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미혼모는 역사적 담론의 장에서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 포섭된 수동적 존재로 고정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미혼모를 하나의 시민 주체로 상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미혼모에 대한 보호사업과 복지정책은 미혼모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나 반대로 취약한 존재로 상정해왔기에, 미혼모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타자화되어 왔다. 일련의 연구에서 미혼모와 관련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난과 빈곤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미혼모의 정치적 배제가 단지 가난과 빈곤이라는 경제적 조건에서만 비롯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가난하지 않은 미혼모는 시민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선뜻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혼모에게 경제적 조건 이전에, 혹은 동시에 혐오와 낙인이라는 문화적 폭력이 끈질기게 부착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혼모를 복지 수혜자로 규정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혐오, 차별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나, 그 해결 방안은 정책 지원 확대에 귀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책의 차원을 넘어, 그러한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는 미혼모를 복지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 주체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50) 이나련·정유진·유현경. 「양육미혼모의 지원 수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32(6), 2023, 741면.

3) 권리 주체로서의 미혼모⁵¹⁾

최근 연구 동향은 현행 복지체제가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의 노동과 돌봄에 대한 이중적 어려움을 주변화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⁵²⁾ 일부 연구에서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관점을 “연민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거나⁵³⁾ 한부모에 대한 관점을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권리의 주체”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⁵⁴⁾ 이처럼 최근 연구 동향은 권리로서의 모성권, 재생산권, 노동권, 돌봄권,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권, 교육권, 주거권, 가족구성권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관점을 권리의 차원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 연구들⁵⁵⁾이 제기하는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은 미혼모를 복지체제 내의 예외적 존재나 특수한 정책 집단으로 다루는 접근을 넘어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전제로 제도의 재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51) 권리 주체 관점은 한부모 연구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미혼모 연구에서는 해당 개념이 아직 적극적으로 차용되거나 이론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미혼모 논의를 포함한 한부모 연구를 주된 분석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미혼모’와 ‘한부모’라는 키워드가 일상적·정책적 맥락에서 종종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가 내포하는 사회적 의미와 제도적 위치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담론적 긴장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이는 미혼모 연구가 독자적인 문제틀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기존 미혼모 연구들이 이론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본 연구에서 두 담론 간의 차이를 가시화함으로써 미혼모 연구 내부에서 권리 주체 논의를 보다 다층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52) 강은화, 2006, 권희정, 2011, 김영정, 2020, 박주희, 2023, 성미애·진미정, 2009, 성정현·김지혜·신원우, 2011, 송다영, 2006, 이해정·송다영, 2021, 장수정 외, 2021, 추주희, 2022.

53) 성정현,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과 복지정책의 변화: 연민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0.

54) 이해정·송다영, 「한부모운동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권리의 주체로」, 『한국여성학』 37(2), 한국여성학회, 2021, 35면.

55) 장수정, 「한부모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37(2), 한국여성학회, 2021., 장수정 외, 「한부모여성의 빈곤과 사회권 연구: 노동권과 돌봄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1), 한국여성학회, 2021.

이러한 접근은 미혼모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이들을 의존적 복지 수혜자로 규정하는 기존 관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젠더화된 돌봄 문제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환원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의존’ 개념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통해 돌봄을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재배치하고, 복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복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혼모 관련 연구의 이러한 관점 변화는 젠더화된 시민권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처럼 최근 연구들에서 권리의 언어가 확장되는 흐름은 분명히 관찰되지만, ‘권리 주체’라는 호명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 주체성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는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권희정(2011)은 미혼모가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해 온 역사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들을 권리 주체로 호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분명해 보인다.⁵⁶⁾ 하지만 논의 전반에서 모성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젠더 부정의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기보다는 오히려 재생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미혼모의 권리를 재생산권, 모성권, 아동복지의 틀로 구성하는 방식은 미혼모를 자율적 시민 주체로 상정한다기보다 ‘어머니’라는 규범적 정체성으로 환원시킨다. 이로 인해 미혼모의 시민적 권리는 모성의 윤리와 아동의 복리에 종속되는 형태로 드러나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권리가 조건부로 승인되는 구조가 강화된다. 이러한 접근은 미혼모를 권리 주체로 호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낳으며, 젠더 부정의를 다른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데 그치게 된다.

청소년 한부모를 권리 주체로 호명하는 연구들 역시, 권리를 정의하는 방식과 그 정치적 방향성에서는 서로 다른 결을 보인다. 김영정(2020)과 추주희(2022)는 모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 신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전자는 재생산권·교육권·노동권을 제도 개선의 언어로 차용하며 권리 주체성을 정책 설계의 근거로 조직하는 반면, 후자는 가족구성권을 중심으로

56) 권희정, 「인권, 모성권, 아동복지 측면에서 본 미혼모를 둘러싼 쟁점들」, 『이화젠더법학』 2(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정상가족’ 규범과 청소년의 성적 지위를 비판적으로 문제화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⁵⁷⁾ 이러한 차이에서 동일한 ‘권리 주체’라는 규정이 서로 다른 문제 설정과 정치적 상상력 위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권리가 개인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혼모를 둘러싼 개별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작업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권리들이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조건 속에서 성립되는가를 비판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한부모여성의 가족구성권을 논의한 김순남(2022)이 인용한 한나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은 논의를 더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⁵⁸⁾ 김순남(2022)은 미혼모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권운동을 ‘박탈된 시민권’의 문제로 재구성하며, 가족을 둘러싼 복합적인 차별 구조를 해체하는 접근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혼모를 권리 주체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개별 권리를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시민으로서 말할 자격을 가지는가’라는 정치적 질문을 제기하는 문제가 된다. 이처럼 권리 주체 담론의 핵심은 젠더화된 시민의 얼굴을 다변화하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남성,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의 시민성 규범을 해체하고, 그로부터 배제되어 온 이들의 시민적 지위를 재구성할 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권리 주체 담론은 미혼모를 둘러싼 젠더 부정의, 즉 부적절한 재분배, 불안정, 대표불능의 문제를 현행 복지 체제나 사회적 낙인과 차별, 배제의 문제를 포괄하는 시민적 권리 박탈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미혼모를 보호의 대상이나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시민 주체로 상정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처럼 미혼모의 권리를 논하는 것은 시민성의 경계를 구획하는 젠더화된 사회 구조를 해체하는 정치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57) 김영정, 「“일탈자”에서 권리주체로: 청소년 한부모의 재생산권, 교육권, 노동권」, 『이화젠더법학』 12(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추주희,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비판적 탐구」, 『가족과 문화』 34(1), 한국가족학회, 2022.

58)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2022, 10면.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미혼모 관련 연구들을 낸시 프레이저의 젠더 부정의, 즉 불평등한 재분배-불인정-대표불능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에서 미혼모 관련 연구가 ‘요보호 여성’, ‘복지 수혜자’, ‘권리주체’로서 미혼모를 규정해왔다는 일련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 동향이 젠더 부정의의 세 차원, 즉 부적절한 분배, 불인정, 대표불능의 문제가 얽혀 젠더 부정의가 재생산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80년대 미혼모는 여성에 대한 포괄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부녀보호사업의 대상으로 환원되었다. 이들은 빈곤 여성, 윤락 여성, 부랑 여성 등을 포함한 ‘요보호 여성’으로서 수용·교정·갱생을 통한 ‘정상적 삶’으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시의 연구들은 미혼모를 일탈자로 간주하거나 병리화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미혼모의 모성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되었다. 이는 1990년 미혼모 관련 연구의 관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째, 2000년대 이후, IMF 금융위기와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 위기’ 담론의 대두, 2012년 낙태죄 합헌결정과 같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미혼모 관련 연구의 동향은 이들을 낙인의 대상보다는 복지 수혜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견지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자녀를 입양 보내는 대신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 변화가 맞물리는 시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변화가 미혼모에 대한 젠더 부정의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젠더 부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복지체제는 재분배와 인정의 차원이 얽혀 있어 젠더 부정의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는 소득 지원과 돌봄 서비스 확충 등 재분배의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미혼모에게 부과되는 낙인과 규범적 모성의 요구를 충분히 문제 삼지 않았다. 반대로 미혼모의 권리 주체성을 강조한 일부 연구들 역시, 이러한 인

정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가족주의적 복지체계를 전제로 한 채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비판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혼모는 ‘자립한 시민’이라는 이상적 기준에 도달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되었고, 이는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미혼모에게 구조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미혼모를 권리 주체로 호명하는 최근 연구 동향이 주로 한부모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미혼모 관련 연구에서는 권리 주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혼모를 시민적 주체로 상상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축적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미혼모를 포괄하는 한부모 담론에서 모성권, 재생산권, 노동권, 돌봄권,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권, 교육권, 주거권, 가족구성권 등 권리의 언어가 확장되고 있으나, 일부 논의는 이를 모성 윤리와 아동복리의 틀로 환원함으로써 미혼모를 자율적 시민 주체가 아닌 조건부적 권리 주체로 다시금 고정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가 강조하는 점은 미혼모를 권리 주체로 호명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권리가 어떤 불평등 구조 위에서 구성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혼모 권리 논의는 ‘권리를 통해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시민’과 ‘비시민’의 경계를 구획해 온 젠더화된 시민성의 권력 구조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정치적 문제로 재배치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 분석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혼모 관련 연구를 복지 담론이나 권리 담론의 확장으로만 이해하는 접근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젠더 정의의 관점에서 미혼모 문제를 재사유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혼모 당사자의 경험을 보다 다양한 방식과 관점으로 포착하면서, 젠더화된 시민권과 정치적 대표성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라현, 「미혼모들의 출산과 양육경험: 구성주의 근거이론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1), 한국가족복지학회, 2021, 387~425면.
- 강은화,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한국여성학』 22(3), 한국여성학회, 2006, 39~59면.
- 권희정, 「인권, 모성권, 아동복지 측면에서 본 미혼모를 둘러싼 쟁점들」, 『이화젠더법학』 2(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100~150면.
- _____,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의 탈모성화 역사」, 『구술사연구』 5(2), 한국구술사학회, 2014, 37~80면.
- _____,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 연구』 15(1), 한국여성연구소, 2015, 51~98면.
-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2022.
- 김영정, 「‘일탈자’에서 권리주체로: 청소년 한부모의 재생산권·교육권·노동권」, 『이화젠더법학』 12(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69~109면.
- 김원,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아시아여성연구』 43(1),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181~236면.
- 김정현, 「복지국가 유형별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족의 노동권과 모성권 지원정책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1, 한국가족복지학회, 2013, 115~142면.
- 김지혜, 「권리 기반의 가족복지정책: 기능주의를 탈피하는 관점의 전환」, 『비판사회정책』 88, 비판사회학회, 2025, 7~31면.
- 김지혜·조성희, 「미혼모의 자립의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7), 한국콘텐츠학회, 2020, 478~490면.
- 김지혜·김희주, 「여성 한부모의 자립 경험과 강점 자원」, 『사회복지연구』 49(4),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8, 159~193면.
- 김혜영,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젠더와 문화』 6(1), 젠더와문화연구소, 2013, 7~41면.
- 김희주·권종희·최형숙, 「양육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 한국가족복지학회, 2012, 121~155면.
- 노먼 페어클립, 『답화 분석 방법: 사회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 분석』, 도서출판 경진, 2012.
- 문순영, 「미혼모자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특성」, 『사회과학연구』 31(2),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73~103면.

-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배경」, 『국제정치논총』 47(2),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97~122면.
- 박주희, 「청소년 한모의 주거 이동 경험과 주거권 인식」, 『민주주의와 인권』 23(1),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인권연구소, 2023, 103~139면.
-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2009.
- 성규탁, 「저소득가정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에 기여하는 사회사업」, 『신학논단』 16, 연세대학교 신학연구소, 1983, 423~435면.
- 성미애·진미정, 「빈곤 한부모여성의 부모권 보장과 일·가족 양립」, 『가족과 문화』 21(3), 한국가족문화학회, 2009, 1~28면.
- 성영혜, 「한국 미혼모의 현황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14, 아시아여성연구소, 1975, 153~167면.
- 성정현,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과 복지정책의 변화」,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0, 3~19면.
- 성정현·김지혜·신원우, 「청소년 미혼모의 대안학교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33, 한국가족복지학회, 2011, 223~258면.
- 성정현·김희주,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가족과 문화』 28(1), 한국가족문화학회, 2016, 33~58면.
- 성정현·장명선·김희주·김지혜·박영미,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성평등 제고 방안」, 『이화젠더법학』 10(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77~108면.
- 소영현, 「재생산 미래주의와 ‘미혼모’의 몸·자리」, 『현대소설연구』 9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5, 137~171면.
- 송다영, 「한부모가족과 여성사회권」, 『사회복지정책』 2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171~200면.
- 신필식,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사회적 재현」, 『한국여성학』 33(3), 한국여성학회, 2017, 323~357면.
- 여성가족부,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21.
- 여성가족부, 『2023 가족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2023.
- 윤소라·장진경, 「미혼모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9(3), 한국가족치료학회, 2021, 535~552면.
- 윤정혜, 「원가족과 미혼모자의 합가 경험과 의미」, 『사회과학연구』 30(4),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259~291면.
- 윤혜미, 「청소년 임신·출산의 경향과 사회적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8, 한국아동복

- 지학회, 1999, 161~186면.
- 은주희·임고윤, 「청소년미혼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무시와 인정」, 『교육연구논총』 41(2), 경북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131~159면.
- 이나련·정유진·유현경, 「양육미혼모의 지원 수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32(6), 한국생활과학회, 2023, 735~746면.
- 이윤정,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 효과」, 『보건사회연구』 4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26~251면.
- 이용우,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97~115면.
- 이현주·송진아, 「10대 미혼모의 학업 중단 경험과 의미」, 『사회복지연구』 42(3),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57~83면.
- 이혜정·송다영, 「한부모운동의 형성과 발전」, 『한국여성학』 37(2), 한국여성학회, 2021, 35~72면.
- 장수정, 「한부모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37(2), 한국여성학회, 2021, 1~34면.
- 장수정·백경흔·김병인·이혜정·오진방, 「한부모여성의 빈곤과 사회적 연구: 노동권과 돌봄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1), 한국여성학회, 2021.
- 장운정, 「재가 미혼모의 홀로서기 경험 연구: 탈시설 과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3), 한국가족치료학회, 2017, 497~528면.
- 정지연, 「미혼모의 노동경험과 그 의미」, 『가족과 문화』 35(3), 한국가족문화학회, 2023, 1~30면.
- _____, 「노동시장에서의 미혼모 차별경험」, 『사회통합연구』 6(2), 사회통합연구소, 2025, 121~159면.
- 정지연·이미정, 「미혼모에서 좋은 엄마로 위치하기: 양육미혼모의 낙인 대응에 대한 연구」, 『젠더와 문화』 13(2), 2020, 115-151면.
- 조주현, 「샌드라 하딩」, 『여/성이론』 14,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6, 146~165면.
- 주디스 버틀러, 임옥희, 「단지 문화적」, 오늘의 문예비평 56, 2005.
- 주연옥·김상순·최연희, 「일부 보호시설 등록 미혼모의 특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2), 지역사회간호학회, 1997, 337~346면.
- 추주희,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비판적 탐구」, 『가족과 문화』 34(1), 한국가족문화학회, 2022, 1~34면.
-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옮김, 서울: 돌베개, 2017.

- _____,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문현아·박건·이현재 옮김, 서울: 그린비, 2016.
- 하지선·김지선·황경란, 「‘시설 입소 중심’ 미혼모 지원의 한계와 개선방향」,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4(3),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20, 95~119면.
- 한영란·양순옥,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1(2), 한국보건간호학회, 1997, 194~208면.
- 홍봉선·남미애,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청소년학연구』 18(9), 한국청소년학회, 2011, 19~52면.
- 허남순, 「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8, 한국사회복지학회, 1986, 107~121면.

| Abstract |

The Critical Feminist Analysis of Studies on
Unwed-mothers
: Focusing on KCI-indexed and Candidate Journals

Kim, Taeyoung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how studies on unwed mothers in South Korea have defined unwed mothers and how such modes of definition have reproduced gender injustice. To this end,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studies related to unwed mothers published in KCI-listed or KCI-candidate journals. The analytical framework employed Nancy Fraser's theory of gender injustice, specifically the three dimensions of maldistribution, misrecognition, and misrepresent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studies from the 1970s to the 1990s predominantly framed unwed mothers as "women in need of protection," while studies since the 2000s have increasingly depicted them as welfare recipients. More recent studies tend to address unwed mothers as rights-bearing subjects. Although these discursive framings have shifted over time, they continue to reproduce gender injustice through the intertwined structure of maldistribution, misrecognition, and misrepresentation surrounding unwed mothers. This study argues for the need to reexamine the discursive transformation of unwed mother studie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gendered citizenship.

Key Words: Unmarried Mothers, Gender Injustice, Critical Feminism, Nancy Fraser

